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
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6조제1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